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0. 1. 13 (수요일),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최기수, 김권구, 김정동, 김태식, 노중국, 문영빈,
안경모, 이해준, 정종섭(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문화재(사적) 지정 등>

- 1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문화재(사적) 현상변경 등>

- 2 사적 제3호 화성 주변 입체화도로(지하도로) 개설
- 3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보호구역 내 병영생활관 신축
- 4 사적 제68호 강진대구면도요지 내 체험관광시설 개발
- 5 사적 제193호 동구릉 등 주변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건설
- 6 사적 제198호 서오릉 주변 서오릉로 확장공사
- 7 사적 제200호 서삼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 8 사적 제268호 전곡리선사유적지 내 전곡리토성 시굴조사
- 9 사적 제272호 만인의총' 내 위패 추가봉안
- 10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근생 및 단독주택 부지조성
- 11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12 사적 제372호 양천고성지 주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
- 13 사적 제427호 부여왕흥사지 문화재구역 및 인접지역 골프장 조성
- 14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주변 사회인야구장 건설 등
- 15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주변 공동주택(아파트) 및 종교집회시설(교회) 신축
- 16 사적 제498호 장흥석대들전적지 주변 주차장 및 가설건물 신축

【검토사항】

- 1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 2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보호구역 지정 검토
- 3 사적 제45호 경주장항리사지 사면보강공사 설계변경(안) 검토

4	사적 제397호 전라 병영성지 남문 복원공사 설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검토	
5	사적 제108호 목면시배유지 사적 사치 재평가 조사결과 검토	
【보고사항】		
1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보고	
2	2010년도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계획 보고	
3	2010년도 궁·능·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계획 보고	
4	사적 제124호 덕수궁 관리사무소(임시) 설치 보고	
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심의사항】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풍납리토성 내 21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09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11차 회의(2009.11.11)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09.11.30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문화재명 : 풍납리토성 (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지정신청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20필지 255,406㎡
 - 추가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78-44번지 외 20필지 2,223㎡
(지번 면적조서 별첨)
 - 추가지정 후 면적 : 441필지 257,629㎡
- (4) 지정사유
(풍납동 126-21, 126-38, 140-11, 222-129)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지정 필요
(풍납동 129-23, 129-26, 133-23)
 - 경당지구 북편에 위치하고 있어 백제시대 문화층 잔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풍납동 149-27, 149-30, 162-33)

- 풍납토성 동성벽 보호구역에 인접하고 있어 성벽 기저부와 백제시대 문화층 잔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풍납동 176-2)

- 경당지구 서편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백제시대 문화층 잔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풍납동 298-5, 298-10)

- 풍납토성 서성벽 유실구간에 자리하고 있어 성벽 기저부와 백제시대 문화층 잔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풍납동 78-44, 80-11, 80-22, 88-94, 89-83, 142-89, 279-40, 257-93)

- 풍납토성 내부 지역 또는 토성 북편 등 백제시대 문화층이 안정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 (2009.1.5/2.13/7.17/8.10/8.19)

- 풍납동 149-27번지, 162-33번지, 298-10번지는 동성벽에 인접하고 성벽기저부와 백제시대문화층에 대한 잔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추가지정이 타당함.
- 풍납동 129-23, 129-26, 149-30, 257-93번지는 동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해 있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2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적으로 추가지정하여 보존할 지역으로 추가지정이 타당함.
- 풍납동 126-21, 126-38, 140-11번지는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북편에 위치해 있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2권역, 3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적으로 추가지정하여 보존할 지역으로 추가지정이 타당함.
- 풍납동 89-83번지 씨티극동아파트에 인접한 북서성벽 내부에 위치하고, 279-40호는 신동아아파트와 인접한 풍납토성 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백제시대 문화층이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풍납동 78-44, 80-11, 80-22, 88-94, 142-89, 257-93번지는 풍납토성 내부 지역 또는 토성 북편 등 백제시대 문화층이 안정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 필요

(2)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2009.2.12/8.27)

- 풍납토성 내부 지역 또는 토성 북벽 등 백제시대 문화층이 안정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 필요

- 풍납동 126-21 등 총 14필지(1,616㎡) 전체 사적 지정 필요

바. 회의결과

- 가결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78-44	도	67	67	○○○	
2	풍납동	80-11	도	46	46	○○○	
3	풍납동	80-22	대	53	53	○○○	
4	풍납동	88-94	대	60	60	○○○	
5	풍납동	89-83	대	93	93	○○○	
6	풍납동	142-89	대	119	119	○○○	
7	풍납동	279-40	대	169	169	○○○	
8	풍납동	126-21	대	109	109	○○○	
9	풍납동	126-38	대	13	13	○○○	
10	풍납동	129-23	대	73	73	○○○	
11	풍납동	129-26	도	10	10	○○○	
12	풍납동	133-23	대	96	96	○○○	
13	풍납동	140-11	대	99	99	○○○	
14	풍납동	149-27	대	176	176	○○○	
15	풍납동	149-30	대	167	167	○○○	
16	풍납동	162-33	대	169	169	○○○	
17	풍납동	176-2	대	198	198	○○○	
18	풍납동	222-129	대	162	162	○○○	
19	풍납동	257-93	대	112	112	○○○	
20	풍납동	298-5	대	116	116	○○○	
21	풍납동	298-10	대	116	116	○○○	
계		21필지		2,223	2,223		

2. 화성 주변 입체화도로(지하차도) 개설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 주변 입체화도로(지하차도)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기 허가된 수원 화성' 주변 입체화도로(지하차도) 개설 건에 대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화성 (사적 제3호)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문동 190외
- (3) 신청내용 [입체화도로(지하차도)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내용

기 허가사항 (09.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차도 L=482m [BOX 구간=215m, U-TYPE 구간=267m] ○ 기존 옹벽 철거 및 보도 신설 ○ 공사용 가도 설치 : 국도 1호선 중점부 오산방향(L=240m, B=4.3m, A=1,021m²)
변경허가 신청사항 (금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차도 L=482m [BOX 구간=215m, U-TYPE 구간=267m] ○ 기존 옹벽 철거 및 보도 신설 ○ 공사용 가도 설치 : 국도 1호선 중점부 오산방향(L=240m, B=4.3m, A=1,021m²) ○ 시점측 통로 압거 신설 : 2@ 4.25~5.00×4.5m ○ 동공원측 차선 추가 구간 연장 : L=240m ○ 중점부 서울방향 상부측도 1차로 추가 : L=200m

라. 현지조사의견(09.12.24, 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 화성 창룡문 사거리 문화재 구역 내외 입체화 도로(지하 압거) 설치

- 현 동북 공심돈 앞 지하 암거 통로 공사는 동북공심돈 앞 65m부근에 위치하며 지표를 굴삭하여 암거를 설치하고 복토하는 공사로, 외형상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진동과 구조에 의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 중 상시계측 등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사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대상지에 유물과 유구의 출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터파기 시 관계전문기관의 입회 하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암거 입구의 석축쌓기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토록 함.
- 화성 창룡문 사거리 동공원측 차선 추가 구간
 - 창룡문 사거리 동공원 측 1개 차선의 추가는 화성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른, 법면의 처리는 야생화 시드 스프레이로 처리하고, 이에 포함되는 초종은 전통 초화류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또한 하부 옹벽의 돌쌓기는 양측 모두 평축 들여쌓기로 시공하고 높이는 기존 옹벽보다 높지 않게 시공하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 보완 후 시행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화성 창룡문 사거리 종점부 서울 방향 상부 측도 1차로 추가
 - 본 건은 창룡문 건너편 사거리의 서울 방향 상부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2차로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가되는 측도 1차로의 구성(차로(6.0m), 보도(2.5m))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화성의 훼손 우려가 적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신청내용 경과

- 07.10.09 허가 : 07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경관분과(07.10.05) 가결
 - 허가내용(07.10.09) : 지하차도 = L=495m², (BOX구간 =220m², U-Type구간 =275m²)
- 09.10.20 변경허가 신청 불허 : 09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09.10.14) 부결
 - 신청내용
 - 지하차도 = L=482m², (BOX구간 =215m², U-Type구간 =267m²)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용 암거 신설(11,406m²)
 - 동북공심돈 측 기존옹벽 철거 및 보도 신설(330m²)
 - 공사용 가도(1,021m²)
- 09.11.18 변경허가 : 자체 검토□허가 처리 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09.12.09) 보고
 - 기 허가내용(07.10.9)

- 지하차도 L=495m [BOX구간=220m, U-TYPE구간=275m]
- 변경 허가내용(09.11.18)
- 지하차도 L=482m [BOX구간=215m, U-TYPE구간=267m]
- 기존 옹벽 철거 및 보도 신설
- 공사용 가도 설치 : 국도 1호선 중점부 오산방향(L=240m, B=4.3m, A=1,021m²)

(2) 지자체 의견

- 창룡문 사거리 입체화도로(지하차도)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007.10.09, 2009.11.1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를 득하였으나,
- 1번 국도 지하차도 공사 완료 전에 통로암거 추가설치 계획에 의거(지하차도로 인한 진출입이 어렵고 도시기능의 양분화와 주변환경과 부조화) 기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으로 향후 국가지정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회의결과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후 시행
 - 시공중 상시계측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법면처리는 전통초화류로 시드스프레이 처리하고, 옹벽의 돌쌓기는 평축돌여쌓기로 시공하되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3. 서울성곽 보호구역 내 병영생활관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보호구역 내 병영생활관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성곽 보호구역 내 병영생활관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성곽 (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등
- (3) 신청내용 (병영생활관 신축)
 - 위치 :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산4-34
 - 내용 : 병영생활관 신축
 - 건축면적 : 344.95㎡
 - 연면적 : 678.18㎡
 - 규모 : 지상 2층(최고높이 8.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라. 현지조사의견(10.1.8 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 본 건물은 서울 성곽 보호구역 내로 2010년10월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군 초소 재배치로 인한 군 병력의 증가(34명→84명)와 국방부 '군인복지기본 계획'에 따라 침상을 개인용 침대로 교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창의문 부근 서울 성곽에 인접하여 병영생활관을 신축하는 공사임.
- 신축 건물의 설치는 G20 정상회의에 따른 군 병력의 증가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그 건물의 높이가 8.5m로 창의문쪽에서 바라다볼 때 서울 성곽보다 그 높이가 높아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계획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신축 생활관의 동측 돌출부(2층 부분)는 인접 성곽의 여장이 낮아지는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동측 돌출부(2층 부분) 일부는 계획에서 제외.
- 설치 생활관은 서울 성곽과 인접하여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축 생활관의 북측(서울 성곽과 연결하고 있는 방향)과 동측에 차폐 수목을 식재.
- 지붕 상부의 장식적인 파라펫 제거하고 채색은 채도가 낮은 색채로 도장.

마. 회의결과

○ 부결

- 성벽 높이보다 설치하는 시설물이 높아 역사문화경관 저해

4. 강진대구면도요지 내 체험관광시설 개발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대구면도요지」 주변 체험관광 시설 개발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인접지역에 체험관광 등을 위한 시설개발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강진대구면도요지 (사적 제68호)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7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체험관광시설 개발)
 -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221번지 일원(문화재구역에서 약 70m이격)
 - 내용
 - 건축용도 : 문화시설□교육시설□치료시설□숙박시설
 - 부지면적 150,000㎡, 시설면적 3,538㎡, 습지면적 12,009㎡, 주차면적 1,155㎡(62대)
 - 시설규모 : 지상1층 4동(도요지기념관□도자공방체험관□가마및치유동□숙소)
 - 소요경비 : 약 5,020백만원(자부담)

라. 참고사항

- (1) 도요지(추정) 무단현상변경 및 훼손 경과
 - 1963.1.21 : 사적지정
 - 일제시대 고적으로 지정(1939.10.18)된 것을 사적으로 변경 지정
 - 1992. 2월 : 강진청자도요지 지표조사보고서 출간 (해강도자미술관)
 - 측량조사 당시 용운리 36호요지는 용운리 산94-11임'에 소재
 - 1994.3.17 : 강진대구면도요지 사적구역 조정
 - 조정사유 : 일제시대 지정이후 잦은 지적변경(분할□합병)과 현상변경 등으로 지정구역 재조정함
 - 조정당시 용운리 36호요지는 용운리 산94-11임' 일부로 지정함

- 2006년도 : 공유지 용운리 산94-11임, 361-1전' 등 민자사업자에 매각
 - 산94-11번지의 일부인 86,120㎡ 지정면적을 99,170㎡으로 확대하여 지적 분할 후 잔여지 매각 [강진군→합진산업(주) (구 동승(주))]
- 2007. 2월 : 언론보도(무단현상변경으로 도요지 훼손)
 - 합진산업이 매입한 용운리 361-1번지에 녹차밭을 개발하고자 개간작업 중 도요지(추정) 훼손 신고됨
- 2007. 3월 : 발굴조사와 현장조사
 - 공사중지 명령 및 지표조사 실시 요청(문화재청→강진군)
- 2007. 3.29 : 무단현상변경 시정조치(사적과→강진군)
 - 사업자 고발 조치 등 절차이행 및 조사자료 결과 통보 요청 (미회신)
- 2007. 12월 : 강진 용운리 테마파크 조성부지 내 지표조사 실시(조선관요박물관)
 - 용운리 36호 요지의 소재지가 용운리 산94-11, 361-1'로 표현됨
- 2008. 6.27 :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매장문화재분과 6차 심의
 - 결과 : 현상변경 사전검토 등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출받아 재검토
- 2009. 5월현재 : 사업자는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위해 설계용역 중
- 2009. 6. 3 : 도요지 보존관리 실태 현지조사 실시(문화재위원 조현중□최건 등)
 - 도요지 정확한 경계측량 및 사건 경위서 등 제출요청(09.6.8)
- 2009. 7월 : 무단 현상변경 등에 대한 법적조치 이행요청(문화재청→전남도, 강진군)
- 2009. 9월 : 조치결과통보(강진군→문화재청)
 - 합진산업 주의조치 및 용운리 361-1번지 일부 기부채납 예정

마. 회의결과

- 부결
 - 유적지의 종합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종합정비차원의 큰 맥락에서 검토

5. 동구릉 등 주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동구릉」 및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보루군」 주변에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구릉□아차산보루군일대 주변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이며, 지난 사적분과 9차회의(09.9.9), 10차회의(09.10.14), 11차회의(09.11.11)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제12차회의(09.12.9)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한 의결에 따라 사적분과 제4차 소위원회(09.12.23)에서 검토한 결과 보류되어 5차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동구릉(사적 제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2-1일원)
- 아차산일대보루군(사적 제455호)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7-1일원)
- 회암사지 지역(사적 제128호) :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산2-16번지 일대 (40m 이격)

(3) 신청내용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 위치

- 동구릉 지역 : 205m→220m (이격거리)
- 도당굿당전수관 지역 : 목재방음 옹벽 설치 및 조경식재(이격거리:280m→360m)
- 아차산일대보루군 지역 : 50m → 110m (이격거리)

○ 신청내용

구분	3차심의 ('09.11.11)	4차심의 ('09.12.9)	소위4차 ('09.12.23)	금번심의 ('10.1.13)	비고
연장	50.54km(4~6차로)	50.54km(4~6차로)	50.54km(4~6차로)	50.54km(4~6차로)	
영업소	○ 동구릉영업소를 동구릉영향검토 구역300m내에 설치	○ 동구릉영업소를 동구릉영향검토 구역 500m밖으로 이동설치	○ 동구릉영업소를 동구릉영향검토 구역 500m밖으로 이동설치	○ 좌동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으로 완전이전
구조물	○ 검암산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한 생태이동통로 설치(B=50m, L=60m)	○ 검암산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한 생태이동통로 설치(B=50m, L=60m)	○ 검암산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터널 설치(B=50m, L=100m)	○ 좌동	L=40m 증
기타				○ 동구릉 동편 에코브릿지 추가 설치 ○ 아차산 터널입구 차폐	소위4차 요구사항 보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09.8.27/문화재위원 ○○○□○○○)

- 동구릉으로부터 약 200m정도 이격되어 고속도로가 건설되며 인근에 IC와 갈매영업소가 신설될 예정임
- 아차산성일대보루군 중 시루봉보루와 망우산3보루를 인접하여 지하를 관통하여 고속도로가 건설됨
- 따라서 아차산일대보루군과 동구릉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2) 지자체 의견('09.8.21)

<동구릉에 대한 분석 및 의견>

- 동구릉 : 1970년 문화재로 지정되어 능역은 잘 보존되고 있으나 43번 국도 건설로 능역이 훼손되어 연지와 금천교가 소실되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로 인한 경관 훼손이 심각함.
-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로 동구릉 주변은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이게 됨.
- 도로 건설을 위해 교량 건설과 절□성토 행위 수반하게 됨.
- 갈매영업소는 동구릉과 170미터 이격되고(필지기준), 허용기준상 용도 제한되는 유류탱크, 정비고 건설이 계획되어 있음.

<아차산일대보루군에 대한 분석 및 의견>

- 아차산일대보루군 : 남동쪽으로 한강과 건너 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을 전망할 수 있어 한강을 둘러싼 삼국의 경쟁관계를 미루어 조망할 수 있음. 주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되지 않아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으나 능선은 군사시설과 등산로로 훼손 진행.

- 능선과 연결된 아차산 입구에 상□하행 터널을 뚫어 터널 입구는 높이 5.31미터, 폭 25.6미터 이상의 절토 행위 수반함.
- 터널은 시루봉보루 지정구역과 1.5m 이격하여 지하 118미터를 관통하며, 비지정문화재이지만 망우산3보루(110미터이격) 지하 206m를 관통함.

<갈매동도당곳에 대한 의견>

- 갈매영업소 부지 일대는, 도 무형문화재(제15호) 갈매동도당곳의 곳당과 겹침.

(3) 지자체 전문가 의견

(경기도문화재전문위원 ○○○)

- 세계유산 동구릉 및 아차산보루군 보존에 영향이 크고, 도당곳당을 관통하는 노선이므로 노선이설이 필요함

(경기도문화재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망

(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 ○○○)

- 본 도로계획 노선은 사적인 아차산보루군 및 망우산3보루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비록 지하터널이라 하더라도 진동, 수로 등의 영향으로 지정문화재에 훼손을 줄 것임
-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갈매동도당곳' 전수관 등을 관통하고 있어 노선변경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아차산보루군'(사적), '갈매동도당곳' 등 지정문화재를 훼손함으로써 노선변경을 적극 권장함

(4) 동구릉, 아차산일대보루군 현상변경 불허 요청 탄원서제출(09.9.5/○○○)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가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제193호 동구릉' 및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에 대해 신청한 현상변경 허가를 불허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 1)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갈매영업소 및 도로 건설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2-1 일원은 동구릉 보호구역으로서 문화재 보호법 상(제34조 등) 현상변경허용 기준 1구역, 2구역, 4구역을 초과합니다.
- 2)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도로 및 터널착공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7-1일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고구려 유물이 발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유물이 발굴될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마. 회의결과

○ 보류

- 도로 지하화 부분을 확장하여 설계도서 보완 제출
- 설계를 보완하여 재심의

- 첨부 1.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관련 협조요청 사본 1부.
2. 동구릉 등 주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현상변경 관련 신중한
심사 촉구 사본 1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관련 협조요청

1. 정부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촉진을 위하여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08.9.19)”을 마련하여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의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 및 위축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개편 방안(‘09.8.27)”을 마련하여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을 40만호에서 60만호로 조기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동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정책에 따라 구리갈매지구 등 제2차 보금자리주택 6개 지구를 관계기관협의, 주민공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9. 12. 3 지정 고시하였으며, 향후 2010. 1월까지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0. 4월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금번 지정 고시된 구리갈매지구의 경계를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계획노선(잠정)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동 고속도로 노선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구계획(안) 작성 및 2010. 4월 사전예약을 실시할 수 없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노선 확정을 위한 귀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2009. 12월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해양부장관



주무관 정정균 행정사무관 홍상표 과장 전결 12/04 김동천

협조자

시행 공공택지개발과-569 (2009. 12. 04.) 접수 보존정책과-3994 (2009. 12. 04.)

우 427-712 경기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 택지개발과 / http://www.mltm.go.kr

전화 02-2110-8334 전송 02-504-9117 / jjkiun@mltm.go.kr / 비공개(5)

녹색은 생활이다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 갈매주택지구 개요

- 위치 : 구리시 갈매동 일원
- 면적/호수 : 1,506천㎡, 8,850호(보금자리 6,200호)
- 지구계 설정 :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계획), 국도47호선 등
- 추진일정(계획)
 - '09. 08. 12.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제안
 - '09. 08. 17~09. 25 : 관계기관 사전협의
 - '09. 10. 20~11. 03 : 주민공람
 - '09. 11. 2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9. 12. 3 : 지구지정 고시(보도)
 - '10. 1. : 지구계획(안) 마련
 - '10. 1. : 환경영향평가(1~3월)
 - '10. 3.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10. 4. : 지구계획 승인 및 사전예약
 - '14. 12 : 준공

□ 문제점

-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노선계획 확정)가 지연될 경우 보금자리 주택지구조성을 위한 지구계획(안) 마련 등 향후 일정에 차질예상
 - 토지이용계획구상, 지구단위계획, 지구계 분할측량 등 지구 계획 수립, 지구계획 확정 및 사전분양 일정에 차질 예상

지구계 결정사유

- ① 도시계획시설(시도56호선) 경계
- ②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경계
- ③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계획) 경계
- ④ 개발가능지(경사도, 표고, 훼손지)
- ⑤ 도시계획시설(국도47호선도로) 경계



【첨부 2】



대한민국국회

우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09호 / 전화 788-2008 / 전송 788-3309
담당자 / 구장주 보좌관 메일 / goodnine@assembly.go.kr

시행일자 : 2009 . 12 . 18

수 신 : 문화재위원장

참 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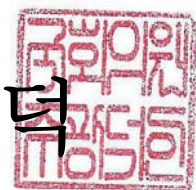
제 목 : 동구릉 등 주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현상변경 관련 신중한 심사
촉구

1. 국정 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 2009. 12. 9 제12차 문화재위원회 회의시, 동구릉 등 주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현상변경 관련하여 소위원회 구성하여 심사,의결하도록 위임'하였으며, 2009. 12. 23 소위원회 개최 예정입니다. 해당 소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송부하오니 신중한 심사를 바랍니다.

※ 첨부 : 동구릉 등 주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현상변경 관련 의견서. 끝.

국회의원 주 광 덕



문화재위원회의 동구릉 등 주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현상변경 심의 관련 의견서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에 노력하고 계신 이인규 문화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현장에는 온 국민이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으로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어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철저한 행정지도 및 건설공사시 현상변경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의 묘역과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보도가 있었고 문화재위원회에 동구릉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관련 현상변경 신청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변경 신청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2009.9~2009.11 제9차~제11차 회의결과 요약 >

- ▶ 구리포천간민자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 대우건설측, 2009.9월부터 구리포천간민자고속도로 노선 현상변경 심의요청
- ▶ 결과 : 부결처리

※ 부결이유

- ① 노선변경없이 갈매영업소의 위험물저장시설만 이전
 - ② 아차산 보루군을 인접하여 지하 관통
 - ③ 동구릉 주변에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영업소) 설치
 - ④ 문화재 훼손우려, 역사문화경관 저해
-

그러나 3차례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측은 재수정한 현상변경안을 제출하여 2009.12.9 제12차 문화재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받았으며, 이 회의에서는 여전히 동구릉문화재보호구역내를 통과하고 있는 노선의 현상변경에 대해 부결처리하지 않고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제12차 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2009.12.9 제12차 회의결과 요약 >

- ▶ 결과 : 소위원회 구성⇒심사⇒의결하도록 소위원회 위임
 - ▶ 대우건설측 현상변경 노선 내용
 - ① 노선일부 변경 동구릉 280m 인접지역, 360m 이격
 - ② 갈매영업소, 갈매동과 별내지구 접경지역 문화재보호구역 500m밖으로 이전⇒ 명칭 : 동구릉영업소로 변경
 - ③ 동구릉과 갈매동간 에코브리지(박스터널형태, 지붕식재)로 보완
 - ▶ 이상의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예정
 - ▶ 소위원회 개최 : 2009.12.23 예정
-

문화유산현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위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해야할 문화재위원회가 신중하고 원칙적인 심사와 결정을 해야함

에도 위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한 것은 개발논리에 밀려 세계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임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009. 7. 8 본 의원과 이견무 문화재청장과의 면담시에도 강조한바 있듯이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불과 200~300m 떨어져서 동구릉 능선을 지나도록 계획하고 있는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노선문제 등에 대해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며 이에 대한 「조선왕릉 종합보호관리 계획」이 신속히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9.12.23 개최예정인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의 「동구릉 등 주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현상변경 심의」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여전히 동구릉 문화재보호구역을 통과하고 있는 수정된 현상변경안에 대한 신중하고 원칙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수정된 현상변경안이 통과된다면 동구릉 조선왕릉의 훼손은 불가피하며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지 못한 역사적 인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신중한 심사를 기대합니다.

2009. 12. 18

국회의원 주 광 덕

6. 서오릉 주변 서오릉로 확장공사

가. 제안사항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 사적 제198호 「서오릉」 주변 서오릉로 확장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오릉 주변 서오릉로 확장공사를 위해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오릉 (사적 제198호)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
- (3) 신청내용 (서오릉로 확장공사)
 - 위치(사업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창릉천) ~ 서울시 구산동 일원
 - 내용 : L=3.2km, B=34.9~41.4m, 교량 4개소/82m, 면적 94,623m²

라. 회의결과

- 부결
 - 확장하고자 하는 도로가 서오릉과 근접하여 문화재 경관저해

7. 서삼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주변 사적 제200호 「서삼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삼릉 주변 원흥동 일대 및 신원동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9-1)
- (2) 대상문화재 : 서삼릉 (사적 제200호)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산42-3
- (3) 신청내용 (공동주택 건립)
 - 위치(사업구간)
 - 원흥동 489-1번지외(A-11블럭)
 - 원흥동 507번지외(A-13블럭)
 - 신원동 227-56번지외(근린공원5)
 - 내용

구분	A-11블록	A-13블록	근린공원5
대지면적	57,283m ²	50,843m ²	공원조성구역
평균층수	13.02층(9개동)	14.77층(6개동)	
건축배치	탑상형 (계획층수 12~20층)	탑상형 (계획층수 15~29층)	
계획세대수	918세대	676세대	
주택유형	전용면적 60m ² ~ 85m ² 이하(보금자리, 임대)	전용면적 85m ² 초과(분양)	

라. 회의결과

○ 부결

-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8. 전곡리선사유적지 내 전곡리토성 시굴조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 사적 제268호 「전곡리선사유적지」 내 전곡리 토성 시굴조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곡리선사유적지 내 전곡리토성 시굴조사를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전곡리선사유적지 (사적 제268호)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 일원
- (3) 신청내용 (전곡리토성 시굴조사)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 일원(전곡리선사유적지 내)
 - 내용
 - 시굴트렌치 4개소, 조사면적 500m²
 - 굴삭기를 이용, 일정구간의 토루를 제거하고 단면을 노출시켜 토성의 여부를 확인

라. 회의결과

- 조건부가결
 - 발굴제도과의 허가를 받아 시행

9. 만인의총 내 위패 추가봉안

가. 제안사항

전북 남원시 소재 사적 제272호 「만인의총」 내 최준□최보의 부자의 위패를 추가봉안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만인의총' 내 남원성'전투 시 순절한 최씨 부자에 대한 위패 추가봉안하는 사항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대한 사항임
- 동 사항은 09. 9차 사적분과 회의(2009.09.00)에서 추가봉안 결정여부는 전북도지사가 기준을 수립하여 결정토록 하고, 추가 봉안키로 결정된 경우 그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사적 제272호 만인의총'
- (3) 신청내용 (최준□최보의 위패 추가봉안)
 - 사업위치 : 전북 남원시 향교동 636번지 만인의총 총렬사 내
 - 주요내용 : 좌선우후(左先右後) 배향원칙에 준해 좌측 하단에 '의사 최준', 우측 하단에 '의사 최보의' 위패 2개소 증설
 - 위패 추가봉안 기준 마련(전북도 작성/세부내용 따로붙임)
 - 1979년 전라북도에서 추가봉안 당시 마련한 기준안을 토대로 세부조항인 썸의기준은 호남절의록을 우선으로 함'을 추가 명문화 함
 -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09.12.04)결과 최준□최보의 위패 추가봉안 결정

라. 참고사항

(1) 문화재개요

- 지정명칭 : 사적 제272호 萬人義塚(만인의총)' (81.04.01월 지정)
- 지정현황 : 전북 남원시 향교동 636번지 일원 17 필지 89,168㎡
- 관리단체 : 남원시장 (실제 전북도청 만인의총 관리사무소)
- 연혁 및 주변현황

- 만인의총은 정유재란(1597)때 국가적인 요충지인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민□관□군 1만여 호국의사의 "형령"을 모신 곳으로, '만인지위' 및 '신원 확인된 50위' 위패를 모신 총렬사가 있다.
- 1963년 사적 제102호(문화공보부)로 지정이후 64년 위치이전 등으로 '지정해제' 되었다가, 1977년~79년 위치이전 및 성역화 사업을 거쳐 1981년 국가 사적 제272호로 재지정□관리되고있음

(2) 민원내용

- 민 원 인 : 최○○(경주최씨 후손대표)
- 내 용 :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전투에 참전하여 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신 催准(준), 催寶義(보의) 부자의 위패를 만인의총 총렬사에 봉안 요청
- 주장근거 : 호남절의록권2 (서울대학교규장각 소장)에 『최준』 편에 아들 『최보의』와 함께 남원성전투에서 순절 기록

(3) 연혁 및 보존관리 추진경과

- 1597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전투 발발
- 1612 (광해4) 남원 유림에서 祠宇를 세우고 7위(정기원 등) 추배 시작
- 1836 (헌종2) 1위(오홍업)를 왕명으로 추가 봉안
- 1840~1974 유림 및 남원향교에서 심의하여 16위 추가 봉안
- 1963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2호 지정
- 1964 사적지정 해제 (사유 : 당초 지정장소 이전으로 진정성 훼손)
- 1981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72호 지정 (관리단체 유림→전라북도)
- 1982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 심의로 26위 추가 봉안(사적지정 이후)
- 2004 경주정씨 추가봉안 요청, 전북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 사유 : 순절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료(호남절의록, 선무원종공신록권 등)에서는 확인되는 바 없음으로 추배 곤란
- ※ 현재 매년 9.26(양력) 당시 남원성 함락일에 전라북도지사 주관으로 제사진행
- 2009 최준□최보의 추가봉안 요청, 사적분과 심의결과 추가봉안 결정여부는 전북도지사가 결정하고, 그에대한 허가여부를 문화재청장이 결정키로 함

마. 회의결과

- 가결

[붙임1] 1979년 전라북도 만인의총 위패봉안' 기준안 공문

전라북도

1979. 11. 22

문재 1775 - 759

수신 남원군수, 만인의총관리 사무소장

참조 문화공보 실장

제목 만인의총 위패봉안

1. 만인의총 위패봉안에 대하여 79. 10. 24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기 통보하니 관계 인사와 지도급 인사에게 주지 시켜 이분이 없도록 하기 바람.

가. 봉안 인물 : 정유 제란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의사, 다만 현재 봉안된 의사는 예외로 함.

나. 추향 (追享) :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다. 봉안 형식 : ① 중앙 상단에는 "남원부성 수철 만인지위" (南原府城 殉節 萬人之位) 의 공동 위패를 봉안하고
② 좌단 양측에는 24종신을 관배자가 보아 좌선

우후 (左先右后) 의 원칙으로 배향

라. 위차 순위 : 봉안 년대순으로 하되 동시 배향 인물은 증정품 개수에 의함, 다만 손공생은 본 서열에서 제외 별도 봉안 (별첨 참조)

마. 제일 (祭日) : 양력 9월 26일로 매년 1회 행함

첨부 : 위패봉안도 1부 곁.

전라북도 만인의총관리사무소		결재	소	장
일	79년 11월 24	지 시 사 관	전	라 부 도
일	" 27			
주우	서 목 제			
담당자	서 목 제 장			



만인의총 충렬사 위패 추가봉안 기준

사적 제272호 만인의총' 충렬사 내 위패 추가봉안 기준안은 1979년 공문 전라북도 문재1175-759(1979.11.22) 만인의총 위패봉안' 기준안을 토대로 시행토록 함.

1. 奉安人物 : 丁酉再亂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의사로 하되, 다만 현재 봉안된 의사는 예외로 함.
2. 推享 :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가. 심의기준은 호남절의록"을 우선으로 함.
3. 奉安型式
가. 중앙 상단에는 南原府城殉節萬人之位"의 공동위패를 봉안
나. 차단 양측부터 참배객이 보아 左先右后"의 원칙으로 배향
4. 位次順位
- 봉안 년대순으로 하되 동시 배향인물을 贈職品階順에 의함.
5. 祭日
- 양력 9월 26일로 매년 1회로 행함.

2009년 12월 4일

전라북도지사

10.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근생 및 단독주택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에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사적 제314호)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69-1임 외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637-2(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7m이격)
 - 내용 : 부지면적 628㎡, 1동, 지상3층(최고높이 12.1m), 건축면적 240㎡, 연면적 624㎡[1층 근생(소매점) 240㎡, 2층 근생(음식점) 240㎡, 3층 단독주택 144㎡], 철근콘크리트조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전문가 의견

(경기도자박물관 ○○○)

- 신청지는 사적지와 접하며, 비지정문화재와도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으로 매장문화재의 훼손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득한 후 진행됨이 타당하다.

(경기도자박물관 ○○○)

- 사업지는 국가사적 지월리 1호 조선백자요지 접경지일 뿐만 아니라 유적의 바로 앞에 위치한다. 또한 현재 유적(실체분포)의 앞에 영구 건물이 없기 때

문에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이의 경관적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문화재단 ○○○)

- 신청지는 국가사적지와 비지정도요지에 15m 인접하여 있으므로 부지조성 시 관계전문가가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회의결과

- 부결
 - 건물의 규모가 커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양각에 대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육의전 박물관 건립에 따른 의견서(사단법인박물관협회/2009.10.26)

-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내용)
 - 1) 100m²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m² 이상의 야외전시장
 - 2) 수장고
 -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 5)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
-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등록요건에 근거하고, 별표 2를 참조한다면, 박물관 등록 및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3) 육의전 박물관 건립에 따른 회신(서울시 문화재과/2009.10.30)

- 사립박물관 등록에 관한 사항
 - 박물관등록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음
- 박물관등록에 관한 요건
 - 박물관 등록요건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됨. 다만 박물관 등록결정은 등록신청 후 별도 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가 최종 결정됨을 안내하오니 착오없이 시기 바라며 박물관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별표2와 같음

(4) 향후 육의전박물관 운영계획(건축주 ○○○, 육의전박물관 건립위원회 ○○○)

- 건축주는 박물관 건립 비용(27억 5천만원)을 투입하되, 박물관 건립과정 및 향후 운영은 선임된 박물관 전문직원이 운영, 관리한다.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문화재단을 건립하여 안정되게 박물관을 운영한다. 또한 박물관 입장료 및 강당 대관, 외부기획 대관료 등은 전액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사용한다.
- 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전문인력을 고용하였고, 박물관 운영은 전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항구히 운영할 것이며, 육의전박물관의 전시공간(지하1층)과 지상9층의 수장고, 시민교육공간(강당), 자료실, 학예연구실, 행정사무실 운영은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서울특별시 등의 행정 규정을 이행 할 것이다. 아울러 육의전박물관의 부족한 부분에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서울시의 지원을 기대한다.

(5) 추진경과

- 매장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추가발굴조사(기간 : 2008.8~9)
- 발굴조사결과(2008.9.20) : 1차 발굴유적보다 보존 상태가 양호함.
 - 1) 14세기 조선건국당시의 유적이 조사됨.
 - 2) 지도위원회 결과 보존 의견
 - 가. 발굴조사된 14세기와 17세기의 유구와 유적을 층위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여 원위치에 복원
 - 나. 층위를 구분하여 전시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1층의 층고를 1m 더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지하 층고 총4m에서 5m로 확대)
- 건물주는 지도위원회 의견에 동의하였으나 추가유적 보존비용 2억4천 소요됨을 부담으로 느껴 난색을 표함.(추가발굴유적의 복층구조 보존을 위한 공사비도 상당부분 증가됨)유적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요청
- 매장문화재분과는 자문위원회의 유적보존과 전시방안에 대하여 승인 결정
- 추가로 발견된 유구 보존 방법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원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따라서 건물주는 양각규정으로 7층과 8층의 축소된 32평을 온층으로 확장하는 현상변경 허가

마. 회의결과

- 가결

12. 양천고성지 주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사적 제372호 「양천고성지」 주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천고성지 주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를 위해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천고성지 (사적 제372호)
 - 소재지 : 서울 강서구 가양동 산4-7외
- (3) 신청내용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
 -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산5번지 외(문화재구역 인접)
 - 내용 :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
 - 규모 : 지하차도 1,322.5m(8차선)
 - BOX 구간 : L=710m
 - U-Type : L=612.5m/2개소
 - 교통우회 도로(저수호안) : 1,530m(8차선)

라. 회의결과

- 가결

13. 부여왕흥사지 문화재구역 및 인접지역 골프장 조성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427호 「부여왕흥사지」 문화재구역 및 인접지역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왕흥사지 문화재구역 및 인접지역에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왕흥사지 (사적 제427호)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37-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골프장 조성)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신리 일원(문화재구역 및 인접)
 -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부지내
 - 내용 : 골프장 조성
 - 골프코스
 - 홀수 : 18홀 / 길이 : 6,325m / 코스면적 : 339,915㎡
 - 주요시설 : 클럽하우스(지하1층/지상1층, 건축면적 2,745㎡, 연면적 5,000㎡)
티하우스(지상1층, 건축면적 100㎡, 연면적 100㎡)

라. 회의결과

- 부결
 - 골프장 조성 대상지역에 일부 문화재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계획 조정이 필요.

14. 강화외성 주변 사회인야구장 건설 등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주변 사회인 야구장 건설 및 공중화장실 건립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사회인야구장 건>

- 강화외성 주변에 해안 방향 원지형보존지역에 사회인야구장 건설을 위해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공중화장실 건>

- 강화외성 일부구간에 공중화장실 건립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외성 (사적 제452호)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3) 신청내용

<사회인야구장>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9-114번지 등 4필지
- 내용
 - 컨테이너 1동(H=6.00m), 덕아웃 2EA(L=10m,H=3.0m)
 - 백네트(L=35m,H=5.0m), 외야웬스(L=240m,H=2m)
 - 부대공사 1식(평탄,배수,마사토 등 작업)

<공중화장실>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298-3 (15.2m 이격)
- 내용
 - 공중화장실 건립 1동
 - 건축면적/연면적 : 65.20m² / 65.20m²

-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4.95m

라. 참고사항

<사회인야구장>

(1) 지자체 의견 (2009.12.17)

-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강화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 지역이며 해안 방향에 위치함.
- 신청부지는 구거와 제방 사이에 위치한 잡종지이며 외성방향으로는 대부분 논(답)임.
- 신청인은 사회인야구장 건설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 하였기에 전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1) 지자체 의견

-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과 인천광역시 유형 문화재 제24호 연미정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문화재구역과 15.2m 이격 되어 있음.
- 문화재구역은 제방과 군부대가 위치해 있으며, 강화외성 발굴조사 결과 조해루 유적이 남아 있어 강화군에서는 조해루 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조해루 진입 위치인 군부대 또한 이전(移轉)에도 협의 중에 있음.
- 강화군 환경위생과에서는 문화재 주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위 신청지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마. 회의결과

○ 부결

-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고 사업시행시 역사문화환경 저해

15. 상주 복룡동 유적 주변 공동주택(아파트) 및 종교집회시설(교회)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소재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주변 공동주택(아파트) 및 종교집회시설(교회)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상주 복룡동 유적 주변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종교집회시설(교회)을 신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상주 복룡동 유적 (사적 제477호)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복룡동 283-7번지 일원

(2) 신청내용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 위치 : 경북 상주시 성동동 61번지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20m 이격)
- 내용 : 공동주택 1동 10층 19세대 (관리실, 기계실, 휴게실 포함)
- 대지면적 1,332㎡, 연면적 2,306㎡, 최고높이 29.9m,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

<종교 집회시설(교회) 신축>

- 위치 : 경북 상주시 복룡동 328-1번지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190m 이격)
- 내용 : 종교집회시설 지상 1층
- 대지면적 893㎡, 건물면적 273㎡, 최고높이 5.8m, 경량철골구조/경사지붕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상주 복룡동 유적 주변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종교집회시설(교회)을 건축하는 행위로 당해 문화재 주변으로 위치상 영향은 적으나 매장유물에 저해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지자체 전문가 의견

<문화재 위원 ○○○>

- 유적지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므로 매장유물 선형조사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경북대 교수 ○○○>

- 유적지와 가까운 거리이므로 매장유물조사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상주시청 ○○○>

- 유적지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신축되는 건물로 사적지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 보류
 - 시굴조사후 재검토

16. 장흥석대들전적지 주변 주차장 및 가설건물 신축

가. 제안사항

전남 장흥군 소재 사적 제498호 「장흥석대들전적지」 주변에 주차장 및 가설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인접지역에 주차장 및 가설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장흥석대들전적지 (사적 제498호)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충열리 165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주차장 및 가설건물 신축)
 - 위치 : 전남 장흥군 남외리 193-1번지 (당해문화재에서 약10m 이격)
 - 내용 :
 - 주차장 설치 : 면적 348㎡, 높이 1m 성토(부피 498㎡)
 - 가설사무실 설치 : 대지면적 150㎡, 건축면적 18㎡(3×6×2.5m 컨테이너)
 - 예산 : 자부담 5백만원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10.01.07)

- 2009년도 06월에 지정된 전라남도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로서, 현재 장흥군에서는 유적정비 및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90% 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를 통해 사적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사업 신청부지는 사적지와 인접하여 있으며, 지정지 사이의 사유지에 사무실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장흥군에서 수립예정인 사적종합정비계획안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흥석대들전적지의 역사문화환경적 측면에서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 최대 최후의 전적지로 국가사적 제 498호로 지정된 유적지임.

유적지 주변에 지방유형문화재 107호인 장흥향교와 지방기념물 제218호인 장흥천도교 교당이 위치하고 있음

현재 사적지의 토지매입을 90%이상 완료하고,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10년도에 기본계획수립 및 성역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 할 계획임.

금회 신청 된 부지는 사적지에 인접되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사무실 및 주차장을 건립하여 생계의 장소로 활용코자 하고 있으므로 건립을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지자체 관계전문가 의견(순천대학교 교수 ○○○□순천대학교 박물관 ○○○)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건설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국가 사적의 경관 등에 의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바. 회의결과

부결

- 장흥군에서 수립할 예정인 사적지 종합정비계획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검토사항】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풍납리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문화재명 : 풍납리토성 (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20필지 255,406㎡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1-4번지 외 1필지 473㎡
(지번 면적조서 별첨)

- 추가지정 후 면적 : 422필지 255,879㎡

(4) 신청사유

(풍납동 297-2번지)

-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해 있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 지정 필요

(풍납동 231-4번지)

- 풍납초등학교 맞은편에 인접해 있고,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중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 추가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 (2009.11.16)

- 풍납동 297-2호는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해 있어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추가지정 하는 것이 타당함.

- 풍납동 231-4번지는 풍납초등학교 맞은편에 인접해 있고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적으로 추가지정 하는 것이 타당함.

(2)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2009.12.17)

- 풍납동 297-2번지 및 231-4번지 2필지 총473m² 사적 지정.

마. 회의결과

- 원안검토
 - 사적으로 지정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m ²)	지정신청 면적(m ²)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31-4	대	243	243	○○○	
2	풍납동	297-2	대	230	230	○○○	
계				473	473	○○○	

2. 연천 호로고루 보호구역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연천 호로고루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문화재명 : 연천 호로고루 (사적 제467호)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일원

(3) 지정신청

- 지정 면적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일원 10필지 21,768m²

- 보호구역 면적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62번지 등 20필지 40,134m²
(지번 면적조서 별첨)

(4) 신청사유

- 해당문화재 보호를 위한 최소한 면적의 보호구역 지정
 - 문화재와 사유지가 접해 있어 유적 보존 및 경관 훼손의 소지가 있음
 - 완충공간으로서 최소한의 법적인 공간 확보 필요
- 해당문화재의 진입로 등 시설도입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 필요
 -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공간 미확보로 탐방객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공간 확보 필요
- 종합정비계획 결과 및 민원을 반영한 해당 문화재의 완충 공간 확보

라. 현지조사의견 (2009.12.23/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 연천 호로고루는 지정 구역이 인삼밭 등의 경작 사유지와 인접하여 있고, 주변이 개발 압력에 의해 유적의 보존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보호구역 지정 신청 필지의 지정과 더불어, 연접하여 연속된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1254묘' 필지의 잔여 부분(4,666㎡)과, 1255전(10,136㎡)'필지를 추가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보호구역 면적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62번지 등 21필지 54,936㎡

마. 회의결과

- 원안검토
 -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되 1254묘', 1255전'을 추가할 것.

연천호로고루' 사적 보호구역지정 지적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고랑포리	921-2	구	584	584	○○○	
2	고랑포리	921-3	구	587	587	○○○	
3	고랑포리	921-5	구	1,598	1,598	○○○	
4	고랑포리	921-6	구	34	34	○○○	
5	원당리	1310	구	550	550	○○○	
6	원당리	1310-10	구	511	511	○○○	
7	원당리	1310-12	구	1,957	1,957	○○○	
8	원당리	1310-13	구	144	144	○○○	
9	원당리	1263	전	4,873	4,873	○○○	
10	원당리	1264	전	4,836	4,836	○○○	
11	원당리	1266-1	잡	3,767	3,767	○○○	
12	원당리	1254	묘	7,499	7,499	○○○	
13	원당리	1255	전	10,136	10,136	○○○	
14	원당리	1256	전	6,685	6,685	○○○	
15	원당리	1256-1	전	307	307	○○○	
16	원당리	1262	전	3,319	3,319	○○○	
17	원당리	1265	대	588	588	○○○	
18	원당리	1265-1	전	3,575	3,575	○○○	
19	원당리	1265-2	대	72	72	○○○	
20	원당리	1266	전	1,555	1,555	○○○	
21	원당리	1267	전	1,759	1,759	○○○	
	계			54,936	54,936		

3. 경주장항리사지 사면보강공사 설계변경(안) 검토

가. 제안사항

2008년 ~ 201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5호 「경주장항리사지」 사면보강공사 설계변경(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8 ~ 201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5호 「경주장항리사지」 사면보강공사 설계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경주장항리사지 (사적 제45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8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사면보강)
 - 하천 이설 : 100m
 - 인도교 이설 1개소
 - 전석쌓기 : L=300m, H=3.0~6.3m
 - 절토 : 16,000m³
 - 성토 : 22,000m³
 - ※ 사지 옛 부지 80m² 회복 가능
 - ※ 고증자료 : 실측도면(「조선건축사론」, 1931년, 藤島亥治郎)

라. 참고사항(관계전문가 자문의견)

<2010.01.06 / ○○○위원, ○○○위원>

- 사면보강공사 시 장항리사지의 원래 부지를 최대한 확보함이 적절함.
- 사면 안정 및 붕괴 방지, 역사 환경을 고려할 때 하천 이설에 의한 사면 경사 완화방안이 좋겠음.

- 하천 주변 호안공은 문화재 경관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도록 함.
- 정비사면은 주변 야생초화류를 지표면에 식재하여 깔고, 주변과 어울리는 소관목을 식재하도록 함.
- 금회 정비구간 외의 동, 서쪽면의 붕괴위험 방지 및 원래 부지 확보 방안을 강구함이 좋겠음.
- 사지 하부 계곡에서 수습한 탑 부재 등의 유구는 사지로 옮겨 정비□보존토록 함.

마. 회의결과

- 원안검토
 - 유속을 고려한 호안설계

붙임 「경주장항리사지」 사면보강 추진 경과 1부

[붙임]

「경주장항리사지」 사면보강 추진 경과

□ 균열 확인 경위

- 07. 4. 4 지반균열 발견(장항리사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시)
 - 위치 : 월성장항리사지서오층석탑 남쪽 10m 지점
 - 규모 : L=15m, B=0.1~0.3m, H=1.2~1.5m
 - 참석자 : 문화재위원 정영화, 노중국, 정정원, 최재영(경주대), 박홍국(위덕대)
 - 의 견 : 사면보강이 시급하므로, 옹벽 및 석축 등으로 즉시 조치 필요
- 07. 4. 9 장항리사지 내 상부 지반균열 발생보고(경주시)

□ 사면보강 관련 경과

- 07. 4.25 지반균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 참석자 : 서만철(문화재위원), 박문호(경북대, 토목), 박방룡(국립경주박물관 관장)
 - 의 견 : 배수로 설치 등으로 응급 조치, 비파괴진단 후 설계반영 필요 등
- 07. 5. 2 기본계획 수립 2차 자문회의
 - 참석자 : 문화재위원 노중국, 주보돈, 최재영(경주대), 박홍국(위덕대) 등
 - 의 견 : 사지 서편 배수로 설치, 균열부 모래□점토로 충전, 비닐덮개 설치 등
- 07. 5.21 응급복구공사 시행('07.7.16 완료)
 - 사업내용 : 균열부 충전, 배수로 설치, 잔디식재 등
- 07. 7월 사면 안정성검토 및 보강대책 연구용역(경주시, 용역기관 : 유덕엔지니어링)
 - 우기시 사면 불안정, Soil Nailing 공법, 녹생토 시공으로 사면 안정성 확보
- 08. 4. 1 사지 비탈면 4필지(7,402㎡) 보호구역 확대지정
- '08. 8.29 사지 비탈면 토지매입
- 09. 1.21 Soil Nailing 시공 모르타르 지표 유출(이상 거동)
- 09. 2.20 사면보강공사 관계자 회의(모르타르 지표 유출에 따른 대책)
 - 참석자 : 유덕엔지니어링(용역기관), 건보건설기술단(설계팀), Soil Nailing 공법 검토자 등
 - 결 과 : 그라운드앵커공법 및 Soil Nailing공법의 병행 시공(설계변경)
- 09. 7.17 변경설계 검토 및 기술지도 회의
 - 참석자 : 이상필(문화재위원), 구호본(건설기술연구원/사면), 황성춘(경주대 학교/토질), 신상훈(유신코퍼레이션/구조 및 토목시공) 등
 - 의 견 : Soil Nailing 공법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조물 설치 등의 보강방법 재검토 필요
- 09.11.23 보강방법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
 - 사면 안정성 및 경관을 고려, 사면 구조물 보강 및 치장 석축 설치(안)으로 시행 등
- 09.12.16 실시설계에 따른 의견 제출(경주시)
 - 현지 여건상 PEM옹벽 설치 곤란, 고증자료를 참조 하천이설(안)으로 변경

4. 전라 병영성지 남문 복원공사 설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200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적 제397호 『전라 병영성지』 남문복원 공사에 대한 설계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0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적 제397호 『전라 병영성지』 남문 복원공사에 대한 설계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문화재명 : 전라 병영성지 (사적 제397호)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319-1번지 일원
- (3) 사업내용(남문 및 육축복원)
 - 남문 복원
 - 규모 : 1층 76.95㎡, 2층 52.07㎡
 - 양식 : 정면 3칸 측면 2칸, 중층 문루, 이익공, 팔작지붕
 - 육축복원
 - H=4.87, B=9.9m, L=19m

라. 설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일시 : 09. 12. 16(수)
- 장소 :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2(2동 205호)
- 참석자(설계심사위원)
 - 문화재청 : ○○○○·○○○○과장 등 관계관 6명
 - 문화재전문위원 : ○○○○, ○○○○ 등 2명
- 심사내용
 - 계획 설계도서와 같이 하부기둥을 육축 속에 설치할 경우 목재기둥 부식이

우려되고, 그 부식으로 인하여 수리할 경우 육축도 해체가 불가피한 구조로서 복원 이후 유지관리 측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문헌이나 자료에도 개거식 구조보다는 중층의 홍예구조가 더 많이 남아 있고, 육축 속 목재 기둥도 장대석기초로 대체가 가능한 홍예구조로 복원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 등을 감안, 동 복원 설계에 대하여는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하여 검토를 받도록 함.
- 공사시행 시 고건축 및 성곽, 발굴기관 등으로 기술지도단을 구성·운영하여 성곽 육축쌓기 및 문루복원 등 공사전반에 거쳐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함.
- 문화재 기록보전을 위하여 수리보고서는 단독보고서로 발간토록 함.

마. 참고사항(관계전문가 자문의견)

〈2009.11.12 / ○○○·문영빈위원, ○○○·○○○·○○○ 전위원〉

- 남문은 개거식 중층 누문으로 복원하도록 한다. 발굴유구에 의하면 초석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홍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거식 누문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 발굴유구에서 장대석(다듬돌)으로 둘러싸인 전면과 2열(보방향 중간기둥) 기둥은 초석을 지상에 설치하여 기둥을 올리고, 기둥 주위를 석축으로 둘러쌓아 후면 기둥만 노출되도록 한다.
- 누문의 난간은 성문임을 고려하여 평난간으로 설치한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설계 시 낙안읍성 등 유사 성곽유적을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바. 회의결과

- 원안검토

5. 목면시배유지 사적 가치 재평가 조사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 사적 제108호 「목면시배유지」 사적 가치 재평가 조사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97년 ~ '99년간 수차례 관계전문가 및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99년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 제11차 회의('99.12.17) 심의결과에 따라 사적 제108호의 문화재명칭을 「문익점면화시배지」에서 「목면시배유지」로 변경한 바 있음.
- 이후 관련 문중(남평문씨□진주(진양)정씨)의 지속적인 민원 및 관련 소송 등이 제기되었으며, '08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08.7.18)에서 목면시배유지 명칭변경 민원에 대하여 사적 가치 재평가 후 처리' 키로 함.
- 양 문중과 합의('08.10월) 후 사적 가치 평가단을 구성('09.3월)하여 현지조사, 조사연구 및 평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종합검토보고서를 작성('09.5~12월)하였으며, 동 종합검토보고서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쟁점사항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임
- ※ '99년 명칭변경 사유
 - 문헌기록(고려사, 태조실록 등)에 따라 문익점 전래, 정천익 재배 성공'이라는 사실(史實)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사적 제108호 목면시배유지(木棉始培遺址, '99.12.29 명칭변경)
 - ※ 최초 명칭 : 문익점면화시배지 ('63.1.21 지정)
- (3) 소재지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06-1번지 일원
- (4) 신청내용 : 사적 가치 재평가 조사결과 검토(별첨 종합검토보고서 참조)
 - 1) 사적 존치 여부 : 사적 유지(역사적□상징성이 큰 기념지)

- 2) 사적 명칭 변경 여부 : 문익점□정천의 공적과 시배□재배 의미를 포함하는 기념지 성격의 발전적 대안으로 변경 필요
- 3) 지정(보호) 구역 변경 여부 : 현재 관리상황에 맞게 담장 내외부터 경내 구역으로 조정 필요(조정범위 : 별첨 참조)

라. 참고사항

- (1) 명칭변경, 민원제기, 평가자문회의 등 주요경과
- 1997. 8.13 명칭변경 민원제기(정호준, 정재철)
 - 1999.12.17 문화재위원회(11차회의) 사적명칭 변경함
 - 고려사, 태조실록 등 문헌기록에 따라 「목면시배유지」로 명칭 변경
 - 1999.12.29 사적명칭 변경(관보고시)
 - 2000. 2.21 사적지명칭 변경처분취소 청구소송 (남평문씨 측)
 - 1심(00.9.21 각하), 2심(01.6.14 항소기각, 01.7.12 판결확정)
 - 2007. 5.15 목면시배유지 경내 문익점선생 유허비 건립신청 (남평문씨 측)
 - 2007. 9.11 문화재위원회 심의(07.9.7) 결과에 따라 문익점선생 유허비 건립 불허 통지
 - 2007.10.30 유허비 건립 불허 처분 취소 청구소송 (행소, 남평문씨 측)
 - 2007.10.31 사적지 내 담장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민소, 남평문씨 측→산청군수)
 - 2008. 1.21 목면시배유지 민원관련(남평문씨) 간담회 개최
 - 2008. 3.17 목면시배유지 명칭변경 청원서 제출 (남평문씨 측)
 - 2008. 5.15 유허비 건립 불허 처분 취소 소송
 - 1심(08.6.3 불허가처분 취소) 2심(08.10.29 피고 항고기각) 3심(09.1.30 피고 상고기각)
 - 2008. 7.18 목면시배유지 명칭변경 민원검토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 사적 가치 재평가 후 논의(사적 지정 해제 등 검토)
 - 2008.10.15 간담회 개최 (문씨□정씨 문중대표, 경남도 및 산청군 담당자 등)
 - 사적지 가치 재평가를 위한 조사 실시 합의
 - 2008.12.10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관보 고시
 - 2009. 3. 4 사적가치 평가단 구성(6명), 현지조사(산청) 및 1차 자문회의
 - ※ 평가 자문위원(6명)
 - 외부 추천 : 최정환(경북대 교수, 남평문씨 추천), 이진한(고려대 교수, 진양정씨 추천)
 - 내부 추천 : 김덕현(전 문화재위원), 윤용혁□이근직(문화재전문위원), 김효영(산청군 향토학자)
 - 2009. 3.16 문익점 유허비 건립 허가
 - 2009. 4. 9 사적지 내 담장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취하(민소, 남평문씨 측→산청군수)
 - 2009. 5. 6 목면시배유지 현지 관리상황 점검(문화재청, 산청군 합동)

- 2009. 5.11 사적가치 재평가 2차 자문회의(문화재청 회의실)
- 2009.5~10월 종합검토보고서 작성 / 11~12월 평가자문위원□지자체 의견수렴
- 2009.8.31 :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첩민원 접수(남평문씨 측, 명칭변경 부당)
 - 사적 재평가 진행사실 및 동일사안 반복□중복 민원 종결처리 규정 안내(09.9.15)

(2) 목면시배유지 정비 현황

기 간	사업내용	소요예산(천원)			비고
		총계	국비	지방비	
'89.6~	토지매입(1,862평) 및 기반조성	71,428	50,000	21,428	
'89.12~'90. 8	효자각 사주문 사적비 이권 및 기반조성	183,783	128,648	55,135	
'91. 7~'96. 2	전시관 삼문 매표소 화장실 건립 및 기타 부대시설	1,881,549	1,317,084	564,465	
'95. 8~'97. 2	담장 석축 산책로 등 정비	308,663	216,064	92,599	
'96. 9~'97. 6	휴게실 신축, 담장 석축 조경 등 정비	336,984	235,889	101,095	
'07. 1~'07. 4	전시관 내부 리모델링 -모형, 전시영상, 설명패널 등	680,000	340,000	340,000	
	총 계	3,462,407	2,287,685	1,174,722	

※ 목면시배유지 전시관(97년 개관)

- 1층 한옥, 건축면적 646㎡, 전시면적 466㎡, 전시품 100여점/ 관람객 연 3만여명

마. 회의결과

- 원안검토
 - 사적은 유지하되 명칭 및 문화재지정(보호)구역은 평가단의 통일된 안을 도출하여 양문중의 동의를 전제로 재검토

“목면시배유지” 사적 조정 및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현 지정면적(㎡)		조정검토 면적(㎡)		소유자	
					지정 구역	보호 구역	지정 구역	보호 구역	주 소	성 명
1	경남 산청 사월리	105-1	사	3,018	-	188	-	3,018		○○○
2	"	106-1	사	430	430	-	-	430		○○○
3	"	106-3	도	113	-	30	-	0		○○○
4	"	107-3	사	76	-	9	-	76		○○○
5	"	108-2	사	36	-	8	-	36		○○○
6	"	108-3	사	142	-	64	-	142		○○○
7	"	114-2	사	181	-	35	-	181		○○○
8	"	1562-15	사	637	-	86	-	637		○○○
9	"	1562-1	도	6,057	-	279	-	0		○○○
소 계	9필지			10,690	1,131			-		
					430	701				
10	"	96-1	사	455	-	-	-	455		○○○
11	"	97	사	673	-	-	-	673		○○○
12	"	98-1	사	975	-	-	-	975		○○○
13	"	98-2	사	20	-	-	-	20		○○○
14	"	99-1	사	1,324	-	-	-	1,324		○○○
15	"	99-2	사	7	-	-	-	7		○○○
16	"	100-1	사	1,231	-	-	-	1,231		○○○
17	"	100-2	사	30	-	-	-	30		○○○
18	"	103-1	사	347	-	-	-	347		○○○
19	"	104-1	사	384	-	-	-	384		○○○
20	"	105-2	사	13	-	-	-	13		○○○
21	"	107-1	사	1,300	-	-	-	1,300		○○○
22	"	115	사	1,504	-	-	447	1,057		○○○
23	"	117	사	1,031	-	-	1,031	-		○○○
계				19,984	1,131		13,814			
					430	701	1,478	12,336		

【보고사항】

1.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보고

가. 보고사항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문화재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예규명칭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2009.12.31. 문화재청 예규 제81호)

(2) 연 혁

- 제정 2009년 7월 29일 문화재청 예규 제68호
- 일부개정 2009년 12월 31일 문화재청 예규 제81호

(3) 그간경과

- 운영 지침 제정 (09.7.29/ 예규 제68호)
 - 회의자료 2일이전 배부 원칙 / 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요령
 - 심의·검토·보고안건 구분기준 / 소위원회 구성 절차 및 권한위임 근거
 - 안건과다 방지를 위한 위원회 부의기준 : 현상변경, 발굴허가 분야
 - 거수·기명투표 중 의결방식 택일 / 의결서에 사유 및 의결정족사항 기재
- 주요 정책현안 토론 (09.11.9)
 - 비문화재분야 위촉, 회의록 공개방안, 수당 인상(안) 등 쟁점 검토
- 분과위원장단 간담회 (09.12.22)
 - 기명투표식 의사결정 등 회의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 및 논의 요청
 -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 해소를 위해 과감한 공개 필요성 긍정

(4) 금번개정내용

- 회의록 공개 시기 및 방식 등 구체적 사항 규정
 - 공개시기/방식 :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

- 작성양식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조사자 및 검토자 실명 표기를 제외
 - 회의록에 의결정족사항 및 특기사항(별도의견)에 대한 기록 추가
- 회의록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연간 회의록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에 보존기록물로 제작 및 보관
 - 회의록 종합본을 제작시 당초 비공개 사항도 수록 원칙
- 기명투표 및 의결서 양식 보완
 - 다수안건 기명투표 양식의 찬성□반대 표기방식 간소화
 - 의결서 양식의 한글화 및 특기사항' 부기란 삽입
 -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 기록이 요구되는 경우 의결서에 기록 가능
- 기 타
 -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분과위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 재확인
 - 매 회의 개시직후 간사가 제척사유를 출석위원에게 고지할 의무 신설

라. 회의결과

- 원안접수

붙임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1부.

[붙임]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09년 7월 29일 문화재청 예규 제68호
일부개정 2009년 12월 31일 문화재청 예규 제8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자료 배부)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를 분과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부의안건 조정) 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분과의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 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위원회가 의결한 다음 각 호 사항은 제2항에 의한 안건 부의 기준으로 본다.

1. 「현상변경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제외기준」 [별표 1]
2. 「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별표 2]

제5조(안건 구분)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전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4조제1항제6호,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전 또는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7조(의결방식)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 ② 가부 동수인 경우 보류나 재의결 등 안전처리 방향에 관한 사항은 참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 ③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규정 제10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 한다.
-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⑤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재심의 요건을 의결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

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 (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석비·조사비·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2조 (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및 수용의사를 증빙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윤리강령 준수약정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위원 참여 기회 부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문화재전문위원이 심

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분기별로 전문위원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7.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상변경 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 제외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도에 반려
-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원회 심의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 문화재위원회에서 기 처리한 내용과 유사 또는 반복적인 안건

- 기 허가한 지역과 동일 지역이거나 문화재 이격거리가 더 멀면서 건물높이가 동일한 경우
- 기 허가한 지역보다 반경 50m이상 이격된 경우로서 기 허가한 건물높이보다 3m(1층 규모) 이내로 초과한 때에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조건부로 의결된 사안

-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키로 심의된 경우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조사』 키로 심의된 경우 발굴조사 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사안
- 신청안은 부결되었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적정규모를 제시한 경우(조건부)로서 민원인이 적정규모로 재신청한 사안

▶ 농촌지역의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 문화재 이격거리 300m이상이고 반경 50m이내에 기존 주택 등이 있는 지역에서 면적 200㎡이하(건축법상 신고사항), 높이 5.0m이하의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사항

- 허가사항 변경사항 중 건물규모(높이, 면적 등)가 20% 이내로 증가한 경우
- 다만, 문화재와의 이격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건물높이는 당초허가
높이로 제한
- 허가사항 변경사항 중 동일 층수(높이)내에서 난간 등 경미한 부속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 허가기간 경과로 허가사항이 취소되어 동일한 규모로 재신청한 경우

▶ 기타 경미한 사항

-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당초 건물높이로 제한하여 기존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증·개축하는 경우
- 천연기념물(노거수)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500m지역에
서 천연기념물이 위치한 지반보다 낮은 지역에 12m이하(3층 규모)의 건
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 기 형성된 마을 내 기존 주택의 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문화재 경관을 위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목식재, 이식,
별채 등을 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에 의거 문화재 이격거리 500m~2km(천연기념물·명승은 4km)
내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원 지형대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수량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수계지역은 제외)
- 기존 통신시설(전신주·중계소 등)을 보수·교체하는 경우
- 기존 도로시설·배수시설을 보수·정비하는 경우
- 부결된 안건을 동일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발굴조사 허가 심의의 주요 검토기준

1.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 조사기간 200일 이상의 발굴(변경허가의 경우도 동일)
- 지표조사 결과, 중요 유구 및 유물 확인지역에 대한 발굴
- 사적지, 고도지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 유적의 발굴
- 구제발굴 중 시대·종류별 복합유적이 분포하거나 유적보존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연법인의 부설 조사기관이 당해 시·도 및 산하 시·군·구가 계획·발주한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
 - 단, 개발목적이 아닌 사업(보존·정비목적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없이 발굴 허가

2. 심의시 주요 검토사항

- 발굴대상 유적의 중요성 및 현상보존의 필요성
- 동일 사업목적으로 인한 발굴은 단일 조사계획에 의하여 검토(동일 목적 사업지역의 분리 발굴 금지)
 - 발굴 결과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는 확인유적의 중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부득이한 경우 분리 조치
- 발굴조사 수행상의 적정성 여부
 - 조사계획의 적정성
 - 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부합여부(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관련)
 - 조사기관 및 대표자, 단장, 책임조사원 등의 보고서 미발간 현황
 -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조건 및 본 지침 위반여부
 - 문화재위원의 직접 발굴조사 참여 여부(학술 발굴은 예외)
- 소규모 민원성 발굴(시굴 10,000㎡, 발굴 2,000㎡) 실적

- 대학 발굴의 참여 범위
 - 1대학 1기관이 발굴조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운영이 본교와 분교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기관 허용
 - 다만, 수중 발굴 및 자연사 발굴은 조사기관의 특성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수 인정 가능
- 공·□사립박물관(전시관 등), 특수기관은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발굴에 한정
- 시굴조사 후 발굴로 전환되는 경우 동일 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인력·조사계획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기관 변경 가능

3.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분과위원회 심의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시간 및 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별지 제1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안건 명)			
찬 성		반 대	
서 명		서 명	
이 유		이 유	

210mm × 297mm [보존용지 (1종) 70g/m²]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분과 제○차 회의			문화재위원 ○ ○ ○ (서명)
안 건 명	찬성	반대	의 견
	(○)	(○)	

210mm × 297mm [보존용지 (1종) 70g/m²]

000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차 ○○○○○○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

▣ 출석위원 : ○○○ (위원장 대행), ○○○,

.....

.....

..... (이상 ○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고사항】

23

24

1. (안전 제목)

가. 제안사항

○

나. 제안사유

○ (안전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2) 대상문화재명 :

○ 소재지 :

○ 지정일 :

○ (이하 대상문화재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

○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

마. 의결사항

○ (이하 의결서의 의결내용란에 기술된 바를 그대로 수록)

○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 (이하 의결서의 특기사항란에 기술된 바를 그대로 수록)

2. 2010년도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201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중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분류되어 추진되는 경주시 소재 12개소 사적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06~'35) 중 문화재청 소관 '10년도 사업 추진 내용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

(2) 사업대상 : 경주시 소재 사적 12건

(3) 사업기간 : 2010년 1월부터

(4) 사 업 비 : 245억원(국비 170억원, 지방비 75억원)

(5) 추진방법

○ 일반사항

- 정비사업의 경우 신중한 추진이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세부계획, 실시설계 등 단계적 추진
-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경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중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계획적 추진

○ 사업별 추진방법

- 쪽샘지구 정비 : '09년에 이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매입□철거지역 보존 및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도록 함
- 월정교 복원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추진하되, 각 공종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
- 황룡사지 :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07.8월) 결과에 따라 '11년까지 기초학술연구를 지속 실시하고, 유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센터 건립 추진
- 경주 남산일원 : '03년 수립된 「남산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유적

정비를 추진하되, 각 개별사업에 대한 정비방법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

- 경주 읍성 : 「경주읍성 정비복원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정비□
복원 범위, 방법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추진

(6) 향후계획

- 추진 단계별 관계전문가 자문 및 검토 시행
- 중요사업은 개별사업별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시행

라. 회의결과

- 원안접수

3. 2010년도 궁·능·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2010년 궁·능·원 내 각종 고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사업과 수목 병충해 방제 등 조경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궁·능·원 내의 각종 고건물 및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원형 보존 관리하고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 등 조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 홍보 및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람환경을 개선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소 재 지 : 사적 제117호 경복궁 등 21개 관리소
- (3) 사 업 기 간 : 2010. 1 ~ 12
- (4) 주 요 사 업 : 경복궁 복원정비사업 등 83건
 - 경복궁 및 덕수궁 복원정비
 - 궁 능 고건축물 보수정비
 - 조선왕릉 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센터 건립
 - 조선왕릉 능제복원 사업 및 조경정비
 - 궁 능 관람환경 개선

라. 추진계획

-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공사발주 및 착공, 설계용역 등 추진
- 주요 보수정비사업은 추후 개별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 시행
-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추진 방지

마. 회의결과

- 원안접수

4. 덕수궁 관리사무소(임시) 설치 보고

가. 보고사항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석조전 복원공사 관계로 현재 석조전 내에 위치한 덕수궁 관리사무소 및 관리요원□지도위원 대기실 등의 이전이 필요한 바, 이에 따른 임시사무소 및 관리요원 대기실을 설치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덕수궁 석조전(본관) 내부 복원공사가 2009년 10월 착공되어 2012년 10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09년도 제7차 회의(2009.7.8)에 보고한 사항임.
- 복원공사 시행을 위하여 현재 석조전 내에 위치한 덕수궁관리사무소, 문서고, 비품창고, 관리요원 대기실 등의 이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와 관리요원 대기실 등을 임시로 설치하여 복원공사 기간 중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소 재 지 : 서울 중구 정동 5-1,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 (3) 사 업 기 간 : 2010. 1 ~ 3월
- (4) 사 업 내 용 : 임시사무소 및 관리요원 등 대기실 설치
 - 임시사무소 설치(1동)
 - 규모 : 198㎡(가로 14.2m, 세로 14m)
 - 구조 : 조립식 가설시설물(내화 샌드위치판넬)
 - 위치 : 덕수궁 포덕문 좌측지역, 기존 강당 옆
 - 관리요원 등 대기실 설치(1동)
 - 규모 : 84.8㎡(가로 16m, 세로 5.3m)
 - 구조 : 조립식 가설시설물(내화 샌드위치판넬)
 - 위치 : 덕수궁 소방문 인접 우측지역
 - 존치기간 : 석조전 복원공사 완료시까지(2010. 1월 ~ 2012. 10월) 임시 사용 후 철거예정

라. 추진계획

- 사업내용과 같이 임시사무소 및 관리요원 대기실 등을 조립식 가설물로 설치하여 사용
 - 임시사무소
 - 관리사무소, 문서고, 비품창고 용도로 사용
 - 조립식가설물인 기존 강당에 인접하여 설치
 - 관리요원 대기실
 - 기존의 함녕전행각 복원 현장사무소(가설조립식건물)를 인수하여 사용
 - 관리요원 및 일용직원 대기실, 창고 용도로 사용
 - 차폐용 조경수 식재 및 미관용 웬스를 설치하여 주변 경관 보호

마. 회의결과

- 원안접수

■ 배치도



■ 현황 사진첩



신축 사무소 이전 예정지



덕수궁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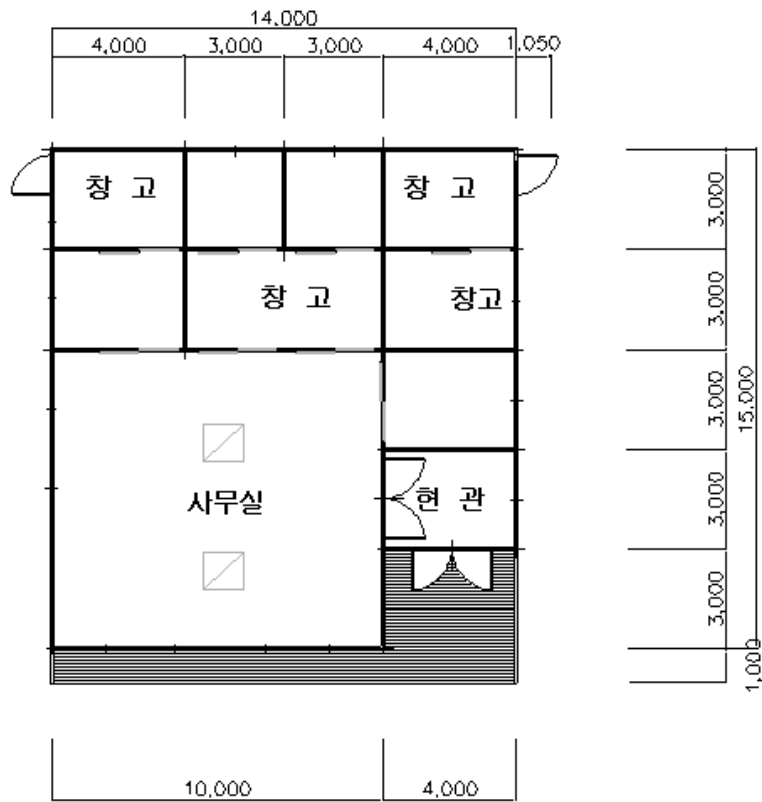


현 소방문 초소 및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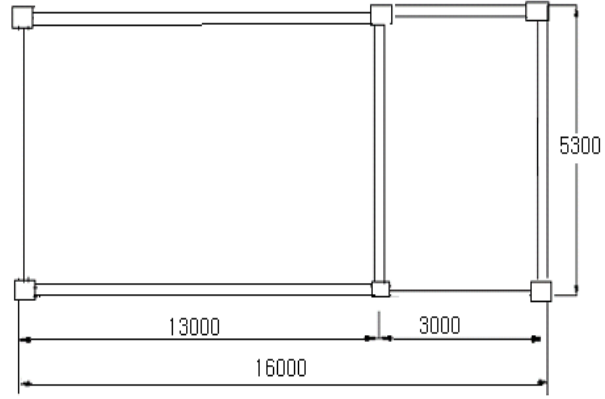
함녕전 복원 공사 현장 사무소

■ 신축 예정 사무소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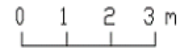


198M2

■ 함녕전행각 복원 현장사무소(기존시설 재사용)



면적: 84.8 m²



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사적 제5호 「부소산성」 주변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신청 22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5 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	(주차장 조성) ○ 당초허가 - 주차장 조성면적 : 7,434㎡ - 포장공사 : 잔디블럭 두께 15cm, 면적 5,588㎡, 콘크리트 포장 두께 20cm, 면적 55㎡ - 조경공사 : 곰솔 3주, 이팝나무 11주, 산수유 10주, 청단풍 5주, 회양목 184주, 영산홍 76주, 자산홍 244주, 조경석쌓기 길이 410m, 높이 2m - 배수공사: 우수관 D600mm 350m, 오수관 D300mm 8m, 측구수로관 400×400mm 25m, 수로관 2개소 400×400mm 87m, 우수맨홀 6개소, 집수정 9개소, 우수받이 17개소, L형측구 폭 500mm, 길이 459m - 허가기간: '09.19~'09.12.31 ○ 변경(금변)허가 - 사업내용 : 변동 없음 - 허가기간: '09.19~'10.12.31	허가	'09.12.18
사적 10 서울성곽	서울 성북구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 건축면적 : 7,907.11㎡ - 연면적 : 80,763.72㎡ - 규모 : 지하 2층/지상5~13층 - 건물최고높이 : 38.30m - 허가기간: '09.12.23~'15.12.31	허가	'09.12.2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10 서울성곽	서울 종로구	○○○	(건축물 대수선) ○ 건축물 대수선 - 3층, 철근콘크리트조, 비내력벽체 철거 및 내력벽 증설 또는 변경 - 3층 일부 벽체 철거(73.69㎡)m 기둥보강 추가 4개소, 보 증설 추 가 4개소, 내부계단 및 공간변경 등 - 허가기간: '09.12.15~'10.1.31	허가	' 09.12.15
사적 10 서울성곽, 서울사직단	서울 종로구	○○○	(서울성곽 등 주변 산책로 조성) ○ 기존도로 및 인도 위 고무칩포장 등 - 포장 : 고무칩포장 1,906.2㎡/아스콘포 장 545.8㎡ - 수목이식 : 소나무 등 3종 37주(주변 으로 이식) - 노후 교통안전 웬스 철거 및 신설 : 435경간(2m/1경간) - 허가기간: '09.12.21~'10.6.30	허가	' 09.12.21
사적 11 광주풍납리 토성	서울 송파구	○○○	《당초허가》 ○ 임시 주차장설치 - 풍납동 78-8번지 등 21개소 2,963 ㎡, 상부에 자갈과 보도블럭을 깔아 지표면 훼손 없이 임시주차장 조성 ○ 허가기간 : '09.7.29~'10.3.30 《변경(금변)허가》 ○ 임시 주차장설치(면적 축소) - 풍납동 78-8번지 등 19개소 2,751 ㎡, 상부에 자갈과 보도블럭을 깔아 지표면 훼손 없이 임시주차장 조성 ○ 허가기간 : '09.7.29~'10.12.31 ○ 조건부 허가 : 풍납리토성 종합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 이전까지 한 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조건부허 가	' 09.12.3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11 광주풍납리 토성	서울 송파구	○○○	(근린생활시설 신축) - 건축면적 / 연면적 : 273.64㎡ / 311.93㎡ - 규모 : 지상 5층 - 건물최고높이 : 15m - 지하 굴착 2.0m 이내 - 허가기간 : '10.1.5~'10.12.31 - 조건부 허가: 터파기시 발굴 전문기관 입회 하에 실시토록 함	조건부허가	'10.15
사적 57 남한산성	경기 광주시	○○○	(이동통신용 전주 5개 설치)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일원 ○ 내용 -최고높이 및 개수 : 8m 2개, 15m 3개 -시설면적 : 1.25㎡(0.25㎡×5개소) ○ 허가조건 -남한산성의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최소 10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관리단체인 경기문화재단 및 남한산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할 것.	조건부허가	'09.12.17
사적 61. 고령 주산성	경북 고령군	○○○	(주산성 내 노후된 편의시설 교체 및 등산로 보수) ○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54-1번지 일대 ○ 내용 -시설 및 방향 안내판 교체:9개소 -체육시설□평의자 교체:6개소 -목계단 보수 ○ 허가조건 -교체되는 체육시설 색상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낮은 채도를 선정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하도록 함.	조건부허가	'09.12.1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84. 함안도항리 고분군 사적 85. 함안말산리 고분군	경남 함안군	○○○	(사적지내 경인년 해맞이 행사) ○위치: 가야읍 도항리□말산리 일원(고분군 내) 등 ○내용: 경인년 해맞이 축제 - 일자 : 2010.1.1 - 내용 : 통일기원제, 희망해오름 무용, 풍물한마당, 풍선 날리기 등 ○허가조건 - 화기 위험물 설치 금지 등 문화재 보호 관리대책 수립 시행 - 각종 비상사태 대비 상황별 안전 대책 수립 시행 - 행사 종료시 시설물 즉시 철거	조건부 허가	'09.12.29
사적 116 해미읍성	충남 서산시	○○○	(초가형 전통찻집 설치(3동/1세트)) - 초가형 원두막(A형) □규격: 500*300*300/1동 - 초가형 원두막(B형) □규격: 350*250*300/2동 - 조건부 허가: 초가형 전통찻집 운영 에 있어 가스시설 사용을 금지함. 초 가형 전통찻집은 철거가 용이한 이 동 가능한 초가형 원두막으로 함.	조건부 허가	' 09.12.31
사적 117 경복궁	서울 종로구	○○○	<당초허가사항> ○ 건축면적 : 2,200㎡ ○ 최고높이 : A동 63.83m / B동 60.33m ○ 최저깊이 : A동 27.8m / B동 31.4m ○ 층수 : A동 지상17층 지하7층 / B동 지상16층 지하7층 ○ 연면적 55,484.27㎡ (A동 30,725.01㎡ / B동 24,759.26㎡) ○ 허가기간: '06.8.18~'10.3.31 <변경(금번)허가사항> ○ 건축면적 : 2,201.5㎡ ○ 최고높이 : A동 65.93m / B동 63.01m ○ 최저깊이 : A동 29.25m / B동 32.17m ○ 층수 : A동 지상17층 지하8층 / B동 지상17층 지하8층 ○ 연면적 55,517.43㎡ (A동 30,631.06㎡ / B동 24,886.37㎡) ○ 허가기간: '06.8.18~'10.11.30	허가	' 09.12.2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150 익산미륵사 지	전북 익산시	○○○	(대지조성 분석연구 시추협의) ○ 목적: 물리탐사를 통한 미륵사 대지조성 분석연구 - 물리탐사 취득 데이터 검증 및 현장 시험 - 지하수위 및 경향 확인 ○ 시추위치: 사역 경계부 4공, 사역 내 3공 ○ 시추장비 : 유압식 시추장비 ○ 기간: 2010.01.11.~01.14. ○ 협의조건 - 유구 및 관람로 훼손방지	조건부 허가	'10.01.08
사적 202 장릉	경기 김포시	○○○	(소매점 및 버섯재배사 부지조성)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675-20번지 외 4필지 ○ 내용 - 소매점 : 대지면적 1,825㎡, 건축면적(연면적) 350㎡(350㎡), 1동, 최고높이 4m - 버섯재배사 : 대지면적 2,120㎡, 건축면적(연면적) 264㎡(264㎡), 1동, 최고높이 7.2m	허가	'09.12.17
사적 202 장릉	경기 김포시	○○○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 신축)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662-5 외 2필지 ○ 내용 - 부지면적 3,490㎡, 1동, 건축면적 688.33㎡, 연면적 3,810.37㎡, 최고높이 11.9m(지하1층, 지상2층)	허가	'09.12.10
사적 202 장릉	경기 김포시	○○○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파이프 천막 구조) 축조)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675-11 ○ 내용 - 면적 : 191.34㎡, 구조 : 파이프, 외벽 : 천막, 높이 : 3.8m	허가	'09.12.1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257 운현궁	서울 종로구	○○○	(한옥 대수선) ○ 노후한 바닥난방 교체, 바닥재(한지장판) 및 벽지교체(한지 벽지) ○ 화장실 타일 교체, 기둥부재 3개소 교체, 보부재 2개소 교체 ○ 샷시 창호를 한옥창호로 교체 ○ 경계담장 개축(32m) - 시멘트블럭담장→한식 사고석 담장(높이 1.8m)	허가	'09.12.21
사적 268 전곡리선사 유적지	경기 연천군	○○○	(전곡리선사유적지 내 기존 주차장 포장공사)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198번지 ○ 내용 -아스콘포장(주차공간) 4,473㎡, 잔디블록(보도) 포장 315㎡ -잔디식재 1,148㎡, 수목식재 49주 ○ 변경허가내용 -아스콘포장(주차공간) →잔디블록포장(주차공간) ※ 주차공간 포장재질 변경	허가	'10.1.11
사적 271 경희궁지	서울 종로구	○○○	《당초허가》 ○ 경계담장 개선 - 담장 철거(길이 27m, 높이 2.2m) 후 철제담장 설치 ○ 허가기간: '09.11.16~'09.12.31 《변경(금변)허가》 ○ 사업내용 : 변경 없음 ○ 허가기간: '09.11.16~'10.3.31	허가	'09.12.3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314 광주조선백 자도요지	경기 광주시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364-6번지 ○내용 -부지면적 : 1,845㎡ -건축면적(연면적) □ 전○○ 건 :131.0㎡(131.0㎡) □ 최○○ 외 1인 건 : 131.7㎡(131.0㎡) -최고높이 : 5.45m(지상1층) ○허가조건 1. 제출된 설계도서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터파기 공사시 관계기관 입회하 에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완료 신고 시 입회결과(입회현황 사진 및 의 견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건부 허가	'09.12.10
사명 5. 가야산해인 사 일원	경남 합천군	○○○	(방범용 CCTV 설치) ○위치 - 가야면 치인리 산10(보장각 외부) - 가야면 치인리 산1-12(통제소 삼거리) ○내용 - 보장각 : 생활방범용 CCTV (2대, 기 건축물에 설치) - 통제소 삼거리: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지주높이 8m) ※ 관계전문가 검토(12.1) □○○○□○○○ 문화재전문위원	허가	'09.12.17
사명 5. 가야산해인 사 일원	경남 합천군	○○○	(해인사 관음암 요사채 신축) ○위치: 가야면 치인리 산262-2번지○내용: 1층(한식 목조), 99㎡ ※ 관계전문가 검토(12.1) □○○○□○○○ 문화재전문위원	허가	'09.12.17
사명 5. 가야산해인 사 일원	경남 합천군	○○○	(해인사 지족암 영각 개축) ○위치: 가야면 치인리 4번지 ○내용: 81.81㎡(상□하 각1층) - 상층(36.45㎡, 한식목조) - 하층(45.36㎡ 철근콘크리트) ※ 관계전문가 검토(12.1) □○○○□○○○ 문화재전문위원	허가	'09.12.17

다. 회의결과

- 원안접수